

#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팹리스 일관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DIPS)」 내 高성장 분야(팹리스 등)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참고)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사업 주요 공고 일정(안) >

구분	주요 내용			일정
① 사업화	국내 최상위 딥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DIPS	대상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별 스타트업	[공고] '25.12.29	
	규모	· 총 200개사, 최대 2억원 (기업당 평균 1.5억원)		
Global DIPS			대상	· DIPS(23~'25년) 사업 종업기업 중 우수기업
			규모	· 총 15개사, 최대 5억원 (기업당 평균 3.5억원)
② 프로그램	기술 고도화, 개방형 혁신, 투자·연계 등 3대 초격차 프로그램 운영			
기술고도화 (TECH-UP)	팹리스 일관지원	대상	· NPU 등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공고]
		규모	· 10개사, 최대 2.5억원 (기업당 평균 2.0억원)	'25.12.29
	NPU 융합	대상	· 국내 NPU 협업을 희망하는 AI 스타트업	폐쇄형 (선정기업)
		규모	· 10개사, 최대 1억원	
개방형혁신 (LINK-UP)	출연연 융합	대상	· 출연연 기술이전 및 기술협업 희망 스타트업	폐쇄형 (선정기업)
		규모	· 20개사, 최대 1억원	
	도메인 AX	대상	· 제조, 바이오, 콘텐츠, 금융 AX 협업 희망 스타트업	폐쇄형 (선정기업)
		규모	· 40개사, 기업당 1억원 내외	
	Vertical 챌린지	대상	· LG, 쿠컴 등 AI 가전 분야 협업 희망 스타트업	[공고]
		규모	· 총 23개사, 기업당 1억원 내외	'26.3월(예정)
	LLM 챌린지	대상	· 독자 파운데이션모델 LLM 활용 희망 스타트업	[공고]
		규모	· 총 25개사(모델별 규모 상이), 기업당 1억원 내외	'26.3월(예정)
	Fabless 챌린지	대상	· 삼성전자, SK, DB 등 파운더리 협업 희망 스타트업	[공고]
		규모	· 5개사, 기업당 1억원(8인치)/2억원(12인치) 내외	'26.4월(예정)
	Platform 챌린지	대상	· 플랫폼 기업 협업 중소·소상공인 AI 챌린지	[공고]
		규모	· 5개사, 기업당 1억원 내외	'26.5월(예정)
	Beauty 챌린지	대상	· 뷰티·헬스케어 분야 대·중견기업 협업 AI 챌린지	[공고]
		규모	· 5개사, 기업당 1억원 내외	'26.5월(예정)

\* 사업별 개별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 모집·선정

##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AI(NPU 등), 전력 등 팹리스 스타트업에 설계자산(IP), 시제품 제작(MPW) 등을 일관 지원하여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 창업 10년 이내 팹리스 스타트업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26. 3월 ~ 12월, 10개월)
- **선정규모** : 10개사
- **지원내용** : ①사업화 자금, ②프로그램 (기술·협업·투자), ③투자·연계 등

구분	세부항목	주요 내용
사업화 자금	① 1년 지원 (26년)	· 사업화 자금 최대 2.5억원(평균 2.0억원 내외)
팹리스 지원 프로그램	②-1. 팹리스 설계(IP)	· 설계(IP), 검증(EDA Tool) 등 설계 SW 지원
	②-2. 시제품 제작	· 파운더리 협업을 통한 시제품(MPW) 제작
	②-3. 글로벌 진출	· 글로벌 전시회 참가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2

## 세부지원내용

※ 프로그램은 추후 변동 가능

### 1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 사업비 70% 미만	· 최대 2.5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비 등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 타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동시수행 불가
·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의 30% 이상 자기부담금 발생 (현금·현물 제한 없음)		
★ 협약체결 시 자기부담사업비 투입계획서 및 관련 증빙 필수 제출 (※ 선정 시 안내)		
★ 현물(보유한 기자재 등)은 공고일 기준 잔존가치액 혹은 구입금액의 20%로 계상		
★ 매년,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예시	정부지원 (70% 미만)	자기부담 (30% 이상)
	2.5억원	69.4%
총 사업비 (100%)		
3.6억원		100.0%

### 2 초격차 프로그램

기술 프로그램	· 국내외 반도체 수요기업(대·중견·중소기업)과의 기술 파트너링, 국내 파운드리 연계를 통한 MPW 제작 지원, ARM 설계자산(IP) 활용을 위한 라이센스 무상 제공
개방형 혁신	· 대·중견 네트워킹, 해외 바이어 발굴, 기술협업 멘토링 등 국내외 대·중견기업의 딥테크 협업 수요 발굴 및 매칭과 같은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지원
투자유치	· 투자유치 교육·멘토링, IR 자료 제작 및 컨설팅, 데모데이 개최 등 국내외 AC·VC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

### 3 후속 지원

후속지원	· 차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DIPS) 신청 시, 우대 혜택 제공 (가점 2점)
------	--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초격차 12대 기술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12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국외창업 : 신청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 국외 창업의 정의 및 지원조건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등(24. 8. 28. 시행)
정의	·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단, 신산업 창업분야는 10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인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li></ul>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li><li>·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발행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일 것</li></ul>
선택 요건	<p>※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대한민국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 법인이 있고, 국내 법인과 국외 창업기업 간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모회사 법인) 국외 창업 요건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을 설립한 국내 법인</li><li>- (자회사 법인) 개인이 국외 창업한 경우, 해당 국외 창업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국외 창업 기업이 국내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li><li>- (사업 연관성) 국내 법인과 국외 창업기업 상호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li></ul></li><li>② 대한민국 내 영업소(상법 614조 근거)를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경우</li></ul>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 계획인가 또는 변제 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1. 일반유통주점업
2. 무도유통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다음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1.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지원사업
2. '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3. '24~'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1]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 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접수기간 : '25.12.29(월) ~ '26.1.23(금), 15: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신청·접수는 15:00에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된 기업에 한해 평가 진행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5: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증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 이외에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사업 신청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 여부 필수 확인

※ 상이한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 (단, 사업계획서 목차 항목은 필수 작성하며, 목차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별도 발표자료(PPT) 제출,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필 수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자동 생성	용량 제한 (30MB)
	②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③-1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제출	
	③-2 사업자등록증	마이데이터* 또는 온라인제출	
해 당 시	[가점] 연구원 스타트업	온라인 제출	용량 제한 (30MB)
	[가점] '25년 초격차(Micro DIPS, 챌린지) 선정기업	제출 불요	
	[가점]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분야)	제출 불요	
	[가점] OpenData x AI 챌린지	온라인 제출	
	[가점] CES 2026 혁신상	온라인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제출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온라인 제출)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접수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5

## 평가 및 선정절차

### □ 평가절차 : 1단계 서류평가 (기술성), 2단계 발표평가 (혁신·성장성)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 검토	② 서류 평가	③ 발표 평가	④ 최종 선정
신청 자격 등 요건·기준 검토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 평가 (선정 규모의 1.5배수)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6.1.20.~3.20.	'26.1.26.~2.13.	'26.2.19.~3.6.	~'26.3.20.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평가 일정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 방법

-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술성 및 가점 여부를 확인하고, 발표평가 대상기업 선정 (최종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

※ 가점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중복 가능, 최대 5점)

### 〈 서류 평가 가점 항목 〉

구분	가점 부여 기준		점수
연구원 스타트업	· (공공) 대표자(혹은 공동/각자대표)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 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5점
	· (민간) 대표자(혹은 공동/각자대표)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소속된 경우로써 해당 법령 등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증빙서류		재직·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소, 연구조합 등 지정 증빙서류	
초격차 선정기업	·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챌린지* 선정기업 * 팹리스, 버티컬 AI, 온디바이스 AI, LLM AI	증빙서류	2점
	·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Micro DIPS) 선정기업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창업도약 패키지 (딥테크 분야)	· 2025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분야) 선정기업	증빙서류	2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OpenData x AI 챌린지	· 2025년 OpenData x AI 챌린지 본선진출 기업	증빙서류	2점
	증빙서류	2025년 OpenData x AI 챌린지 본선진출 증빙	
CES 혁신상	·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최고 혁신상 포함)	증빙서류	1점
	증빙서류	CTA 공식 수상 증빙(인증서, 이메일, 인증 마크 등)	

\* 사업 신청 시, 가점 관련 증빙을 미제출한 경우 가점 미적용

\*\* CES 혁신상을 2개 이상 수상한 경우에도 가점은 최대 1점 부여

③ **발표평가** : 글로벌 협업 수요, 융합 가능성, 글로벌 투자 수요 등 혁신성·성장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평가(20분 내외, 발표+질의)

- 발표평가 시, 별도 국민평가단이 발표평가장 내 입장하여, 평가 과정 내 불공정, 부정행위 등 모니터링 시행

④ **최종선정** : 신청자격에 충족하면서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로 선정되어 주관기관으로부터 최종 선정예정자 통지를 받은 경우 협약체결확인서 제출 의무
- 단, 제출 기간 내 협약체결확인서 미제출 및 신청자격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 취소
-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 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지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될 수 있음

####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인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협약체결확인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팹리스 일관지원)」 ‘협약체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 (확인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인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인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인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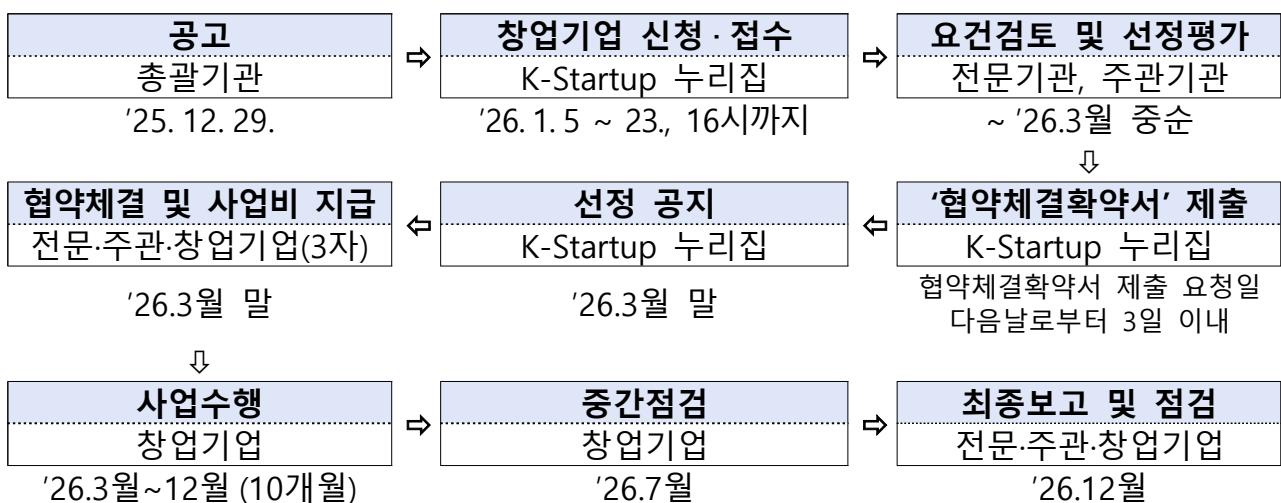
## □ 평가지표

- 서류 평가 : 글로벌 대비 기술 수준, 기술개발 가능성과 차별성, 대표자(팀) 역량 및 BM 등 기술성을 중심 평가
- 발표평가 : 기술·제품·서비스 사업화 전략 및 투자 가능성, 외부 협력 가능성, 글로벌 진출전략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평가지표 주요 내용(안) 〉

구분	항목	주요 항목	평가내용
서류 평가	기술 성	기술 수준 및 우위	·글로벌 기술 대비 보유 기술의 우수성, 차별성 등
		기술개발 가능성	·중장기 지원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기술개발 가능성 등
		기술개발 역량	·연구조직(인력), 협력 기관(기업) 등 기술 개발(고도화) 역량
	성장 성	기술 고도화 계획	·보유 기술, 제품, 역량 등에 대한 기술고도화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전략	·기술 고도화, 사업화 등 중장기 사업 추진 로드맵의 적정성
		성장 전략	·투자유치, 개방형 혁신 등 성장 전략의 적정성
발표 평가	혁신 성	사업 가능성	·기술, 제품, 역량 등 기술성 대비 사업화 추진 전략의 혁신성
		융합 가능성	·동종, 이종 기술 제품 등 산업 융합 가능성 및 혁신성
		협력 가능성	·국내외 대·중견기업 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등 협력 가능성
	글로벌	글로벌시장 수요	·글로벌 대·중견기업 수요 등 시장 적합성(PMF)
		글로벌 진출 준비	·글로벌 진출 준비 단계 및 현황,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
		글로벌 진출 전략	·글로벌 진출 전략의 타당성 및 수행 역량

## □ 추진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http://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협약체결) 불가
  - 단, 20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인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0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 자격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미제출 등 사유로 신청 자격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체 평가 과정은 창업기업 대표자가 반드시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단, 천재지변 또는 외국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가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평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으로 허용 (대표자 위임)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 (확인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인서'를 제출 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인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인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창업 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 기업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 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를 현금으로 대응하는 경우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7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서울대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02-880-8741, 02-880-8742)

**붙임 1****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기준
- ※ 사업 목록은 2026년 사업 기준이며, 참여 중인 사업이 창업사업화 지원임에도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24년, 25년 등) 동시수행 가능
- ※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창업지원사업은 동시수행 가능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중소벤처기업부
3	•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5	•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6	•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7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8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9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10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1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2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3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4	• 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5	•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6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7	•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19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	•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1	•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	•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3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4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5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6	•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7	•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9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0	•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31	•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32	•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33	•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4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5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6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특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 붙임 2

## 창업여부 기준표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법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전환	창업			
			창업아님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이종				
※ <b>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b>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b>동종의 범위</b>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b>과점주주</b>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b>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b> : ①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